## 조선봉건왕조시기《10악》에 포함된 사람의 생명, 건강을 침해하는 범죄와 형사책임규제의 반동성

천 세 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에 이르는 모든 착취사회의 법은 착취계급을 위하여 복무하였으며 착취계급은 그것을 통치수단으로 하여 국가적지배를 유지하여왔습니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0권 140 폐지)

조선봉건왕조의 법은 철저히 봉건지배계급, 착취계급을 위하여 복무하였으며 조선봉건 왕조의 통치배들은 법을 통치수단으로 하여 국가적지배를 유지하였다.

조선봉건왕조가 봉건지주들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벌하기로 한 범죄조건들은 많다. 그중에서 봉건도덕에 저촉되는 살인, 상해, 구타행위들을 《10악》에 속하는 가장 엄중한 범죄의 하나로 특별히 규정하고 그 범행자들을 철저히 징벌하도록 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10악》에 포함된 사람의 생명, 건강을 침해하는 범죄와 형사책임규제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봉건왕권을 신성화하고 보호함으로써 인민들에 대한 봉건통치배들의 정치적지배를 실현하기 위한것이였다는데 있다.

조선봉건왕조는 국가의 립법권, 행정권, 사법권, 최고군통수권이 국왕에게 집중되여있 었으며 그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인정되였다. 나라의 모든 주민은 왕의 《적자》로, 국가의 토지는 《왕토》로 간주되였으며 왕의 명령은 법으로 인정되여 누구도 어길수 없었다.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봉건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제도를 유교적인것으로 재정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문존무비의 통치기구와 통치질서를 수립하였으며 사회생활에서 봉건유교도덕을 장려하고 허례허식적인 의례제도를 세웠다.

조선봉건왕조는 왕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해를 주는 크고작은 모든 행위를 유교도덕에 저촉되고《왕도정치》를 침해하는 가장 엄중한 범죄로《10악》에 규정하고 그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사형에 이르기까지의 무거운 형벌을 들씌우도록 하였다.

조선봉건왕조의 형률에 의하면 왕의 생명,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었을 때에는 《사직(국가나 조정을 가르키는 말)을 위태롭게 한》범죄로 되였다. 이 범죄의 범행자들은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릉지처참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가족, 친척들에게도 참형에 이르기까지의 무거운 형벌을 들씌우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범죄가 감행되고있는것을 알면서도 방임하였거나 숨겨준자도 참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강상》을 어겨 왕의 생명, 건강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그것이 고의인가, 과실인가, 우연적인가 하는 죄책성과 기타 범죄조건여하에는 관계없이 부관참시형, 참형, 교형을 비롯한 중형을 들씌우도록 하였다. 이 범죄의 관여범과 련좌대상들인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왕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거나 그에 위험을 줄수 있는 범죄로 되는 조건들은 지적한 외에도 많았다. 실지로 이와 관련된 사소한 행위나 표현에 이르기까지 범죄시되였으며 그 것은 봉건도덕의 미명아래 봉건국가가 중시한 《10악》에 속하는 범죄중에서도 가장 엄중한 범죄로 되였다.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형률의 정조들에서 왕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들의 엄중성정도에 따라 사형에 이르기까지 형벌을 정하였다. 그러나 실지 형사실 천에서는 왕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범한 사람들은 왕과 왕도정치를 침해한 강상죄인으로 되여 사형을 면치 못하였다.

《강상》을 위반하고 왕의 생명, 건강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들을 《10 악》에 속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그를 범한 사람들에 대한 형사징벌을 강화하도록 한것은 왕과 왕권을 신성화하고 보호함으로써 중앙집권적통치체제를 강화하고 인민들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강화하기 위한것이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10악》에 포함된 사람의 생명, 건강을 침해하는 범죄와 형사책임규제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봉건적신분제도를 공고히 함으로써 인민들에 대한 봉건지주들의 억압과 착취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것이였다는데 있다.

조선봉건왕조는 사람들을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그것을 대대로 이어받게 하는 신분제 도를 실시하였다.

《경국대전》을 비롯한 조선봉건왕조의 법전들과 규정들에 의하면 봉건지주계급에게는 국 가정치생활에 마음대로 참가할수 있는 권리를 주었지만 근로인민에게는 국가정치생활에 참 가할수 있는 모든 권리를 주지 않았다.

조선봉건왕조의 법전들과 규정들에는 재산으로 취급한 노비외에 관리로 될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신분적인 한계를 그어놓은것이 없다. 그러나 실지로는 넘나들수 없는 엄격한 신분적장벽에 의하여 특정한 계층만이 관리로 될수 있었다.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귀한자가 천한자를 다스리고 천한자가 귀한자를 받들어 섬기는것은 당연한 하늘의 리치》이며 이것이 《정사하는 기본방도》로 되기때문에 그 침해로 되는 행위들을 중한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세종실록》 권40 10년 5월 정축)고 하면서 봉건지주들의 착취와 억압에 항거하여나선 인민들에게 살인, 상해, 구타죄를 들씌우고 잔인하고 포악한 형벌로 징벌하도록 하였다.

조선봉건왕조의 형률에서는 관리나 백성으로서 왕명을 받고 나간 사신관리를 죽이거나 상해를 입혔거나 구타한 행위, 백성으로서 자기 고을의 원을 죽였거나 상해를 입혔거나 구타한 행위, 군사로서 자기 직속의 병마사, 만호, 백호를 죽였거나 상해를 입혔거나 구타한 행위, 리전이 자기가 속한 관청의 5품관이상 장관을 죽였거나 상해를 입혔거나 구타한 행위, 노비나 고공(머슴)으로서 자기 상전이나 이전 상전의 조부모, 부모, 법이 정한 범위내의 친척을 죽였거나 상해를 입혔거나 구타한 행위 등을 범죄로 규정하였다.

특히 봉건국가와 봉건지주들의 착취와 억압에 항거해나선 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봉건도덕에 어긋나는 살인죄로 몰아붙이는 경우에는 가장 파렴치하고 포악한 형벌이 들씌 워졌다. 조선봉건왕조의 형률에 의하면 백성으로서 자기 고을 원을, 군인으로서 자기 직속 의 병마사, 만호, 백호를 죽인 경우에는 참형에 처하였다. 이에 있어서 살인미수인 경우에 도 교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특히 노비나 고공(머슴)으로서 자기의 상전과 상전의 조부모, 부 모를 죽인 경우에는 사형중에서도 가장 중한 형벌인 릉지처참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징벌 의 도수를 더욱 높이였다.(《대명률직해》의 《형률》))

조선봉건왕조의 력사기록들에는 노비가 몹시 포악한 자기 주인의 갖은 학대에 원한을 품고있다가 죽인데 대하여 사지를 찢어죽이는 형벌(릉지처참형)에 처하였다는 기록을 많이 전하고있다.

인민들에게 봉건도덕에 어긋나는 상해죄나 구타죄를 들씌우는 경우에도 가혹한 형사 징벌을 들씌우도록 하였다. 조선봉건왕조의 형률에 의하면 일반구타죄에는 태형 20대를 적 용하고 일반상해죄에는 상해의 엄중성정도에 따라 태형 30대로부터 장형 100대와 류형까 지의 형벌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백성으로서 자기 고을의 원을 구타한자, 리전이 직계상관인 5품이상의 장관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참형에 이르기까지의 형벌을 들씌우도록 하였다. 군사, 백성, 리전 등이 자기 직속상관이 아닌 3품이상의 관리를 구타한 경우에는 장형 80대와 도형 2년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정상에 따라 장형 100대와 류형에 이르기까지의 형벌을 들씌우도록 하였다. 노비로서 자기 상전이나 그의 친척을 구타한 경우에는 그 촌수의 등급에 따라 릉지처참에 이르기까지의 형벌을 들씌우도록 하였다. 노비로서 자기 상전이나 그의 친척을 구타한 경우에는 그 촌수의 등급에 따라 릉지처참에 이르기까지의 형벌을 들씌우도록 하였다. 고공인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대명률직해》의 《형률》), 《속대전》의 《형전》) 반대로 노비주인이 자기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노비를 구타하여 죽인 경우에는 범죄시하지 않았다.(《대명률직해》의 《형률》)

봉건도덕에 저촉되는 살인, 상해, 구타죄를 규정하고 그를 범한 사람들에 대한 형사징 벌을 강화한것은 결국 봉건도덕의 미명아래 봉건신분제도를 공고히 함으로써 인민들에 대한 봉건지주들의 억압과 착취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것이였다. 봉건통치배들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신분적차이와 전제국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통치기구의 매 요소마다에서의 품계적차이를 법으로 규정하고 봉건도덕의 미명아래 그 준수를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봉건지주들에 대한 인민들의 무조건적인 순종이 도덕의 외피를 쓰고 강요되였으며 그를 침해하는 현상은 봉건국가가 가장 중시한 《10악》에 속하는 범죄로 되여 그를 범하는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형벌이 들씌워졌다.

이것은 봉건지주계급의 독재정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인민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것이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10악》에 포함된 사람의 생명, 건강을 침해하는 범죄와 형사책임규제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가부장적인 종법체계를 유지하고 남존녀비를 합리화하기 위한것이였다는데 있다.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왕에게 잘 복무하려면 반드시 부모를 잘 섬기고 공손하게 받들어모셔야 하며 집에서 부모를 잘 섬기고 공손하게 받들어모시면 그 마음을 왕을 잘 섬기는데 옮길수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는 자식의 근본으로 되기때문에 자식은 아버지에 대하여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여야 한다고 설교하였다.(《세종실록》 권86 21년 9월 병진 정사 《삼강오륜》)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자식으로서 부모를 잘 섬기고 받들어모시지 못한 사람은 《하늘땅에 용납될수 없는것이며 나라의 법으로도 용서하지 않는다.》, 《다섯가지 형벌에 속하는 3 000가지 죄중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지 못한 죄보다 《더 큰것은 없다.》(《세종실록》 권86 21년 9월 병진 정사)라고 하면서 봉건유교도덕에 저촉되는 자식들의 사소한 행위에 이르기까지 범죄시하여 형벌로 징벌하도록 하였다.

조선봉건왕조는 봉건유교도덕의 미명아래 가족친척내에 확립된 상하종속체계를 고수 하여 가부장적인 종법체계를 보호함으로써 인민들에 대한 억압과 수탈을 효과적으로 철저 히 실현하려고 하였다.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동성 및 이성친척들내에서 가부장들을 정점으로 하는 우아래의 종속체계를 세우고 충충이 종속된 가부장들을 전제주의적인 봉건통치체제에 철저히 얽매여놓고 그들을 통하여 가족친척들에 대한 억압과 수탈을 보장하려고 하였다. 바로 이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족친척내에서 아래사람이 웃사람을 잘 섬기지 못한 행위를 봉건도덕을 침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그 범행자들에 대한 형사탄압을 강화하였던것이다.

조선봉건왕조의 형률은 처나 첩으로서 남편이나 남편의 부모, 조부모의 생명건강을 침해한데 대한 형사정벌도 강화하였다.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남존녀비를 합리화하여 녀자는 시집가면 반드시 자기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할것을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안해는 남편과 남편의 부모, 조부모 등의 요구에 그것이 옳건 옳지 않건 관계없이 무조건 순응하여야 하였으며 이에 배치되면 범죄시하였다. 특히 처나 첩으로서 남편이나 남편의 부모, 조부모의 생명, 건강을 침해하거나 침해할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10악》의 강상죄로 되여 가장 참혹한 징벌을 면치 못하였다.

이것은 남자를 존대하고 녀자를 천시하는 남존녀비를 합리화하고 가부장적가족제도를 보호하기 위한것이였다. 녀자는 어려서는 무조건 아버지를 따라야 하며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봉건유교도덕을 어긴 처나 첩을 형벌로써 다 스려 남편이나 남편의 부모들에게 무조건 순종하게 함으로써 가정내부에서의 가부장의 절 대적권리를 철저히 행사하게 하려고 하였다.

사람의 생명, 건강을 침해하는 범죄와 형사책임의 규제에서 주목되는것은 조선봉건왕 조후반기 법전들에 구타죄에 대한 규제의 폭을 넓히고 그에 대한 형사징벌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조선봉건왕조후반기에 제정된 형률들에서는 봉건도덕을 침해하면서 한 구타행위에 대한 범죄조건들을 특별히 많이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였다.

조선봉건왕조후반기 법전들인《속대전》과《대전통편》의 구타죄를 규정한 조문들의 거의 전부가 봉건유교도덕을 위반하면서 한 구타행위와 관련된것들이다.《속대전》에 규정한 구타죄만 놓고보아도 이것을 잘 알수 있다.

《속대전》에 규제된 구타행위는 상천이 사족을 때린것, 노비가 상전을 때린것, 자식이 부모를 때린것, 아전이 웃관리를 때린것 등이다. 그중 대부분은 상천이 사족을 때렸거나 노비가 상전을 때린것이다.

봉건통치배들은 저들의 특권적지위와 권력을 리용하여 상천이나 노비를 소나 말처럼 때리면서도 그것을 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규제하지 않았지만 노비나 상천의 사소한 항거와 반항도 모독죄요, 구타죄요 하면서 가혹한 형벌을 들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도록 형률에 규제하였다. 이것은 무너져가는 봉건제도를 어떻게 하나 유지하려는 봉건통치배들의 궁여지책의 산물이였다.

조선봉건왕조는 사람의 생명,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10악》에 속하는 강상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사징벌을 특별히 강화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자는 어떤 경우에도 형벌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였다.

그리고 봉건유교도덕에 저촉되는 살인, 상해, 구타죄들에서는 형벌의 면제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대사령을 선포할 때마다 이러한 보류조건은 놓치지 않고 강조하였다.

이 모든것은 봉건왕권을 신성화하고 봉건적신분제도를 공고히 하며 가부장적인 종법 체계를 유지하고 봉건유교도덕을 고수함으로써 봉건통치를 강화하고 인민들에 대한 억압 과 수탈을 합리화하기 위한것이였다.

우리는 착취사회의 국가와 법의 반동성을 똑바로 알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보장해주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